구분 관련규정 공제금 내역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조특법§30의2 ∙ 중소･중견기업이 2021.6.30.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1인당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30의3 ∙ 연간 임금감소 총액×1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 보전액 × 15%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30의4 ∙ 전년대비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액 중 청년(15∼ 29세),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100%,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50%(신성장서비스업 75%) \* 고용이 감소된 경우 잔여기간 공제배제 및 공제세액 납부 전자신고세액공제 조특법§104의8 ∙ 직접 신고：2만원(납부할 세액 한도) ∙ 세무대리인 대행：세무대리인 본인의 소득･법인세 신고 월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동안 법인세를 신고 대행한 경우 납세자 1인당 2만원(부가가치세 신고 대리에 따른 세액공제를 포함하여 300만원 한도, 세무･ 회계법인은 750만원 한도) 기업의 운동경기부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104의22 ∙ 취약종목의 운동경기부 운영비용에 대해 창단 후 3년간 10% 세액공제 ∙ 장애인 운동경기부 운영비용에 대한 창단 후 5년간 20% 세액공제 ∙ 이스포츠경기부 창단기업에 대해서도 3년간 운영비용 10%세액공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104의25 ∙ 수요자에 한해 공급가액의 0.2% 세액공제 \*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의 10% 한도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104의30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 × 1% + 직전연도 대비 증가분 × 3% \*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의 10% 한도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122의4 ∙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이 있는 경우 다음의 하나의 비율을 선택하여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 전년 초과금액의 50% 또는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126의6 ∙ 성실신고 확인비용 × 60%(150만원 한도) ☞ 동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중복되는 경우는 선택 적용(조특법§127 참조)